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원(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원(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원(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원(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전문대학 학과장, 장	250,000원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학관 · 교육연구관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 · 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또는 집행기관과 집행기관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1) 4급 · 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거나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 · 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 처장 · 기획연구실	200,000원

	장 · 교양과정부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1·2·3급 상당 직 위)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 반임기제공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 무원(5급·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 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 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 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 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4조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봉 급을 받는 총장은 제 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6.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